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조 치 일 : 2018. 9. 17.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직원 교육업무 관리 강화 필요

○ 2014.1월~2016.9월 기간 중 대주주인 ㈜□□□의 지점 △△△△컨트리클럽(이하 '△△△△CC') 에서 임직원 1,057명을 대상으로 와인교육, 테이블매너, 골프매너, 골프장 견학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된 「리더의 품격」 등 연수를 총 55회(소요예산 642백만원)에 걸쳐 실시하면서

계열사에서 실시하는 1인당 평균 6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의 직원교육인데도 교육 실시의 필요성 및 교육 소요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직원교육 업무수행시에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교육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직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육비 집행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 2015.9월～2016.8월 △△△△CC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복지몰에서 일괄 구매하면서 정규영수증(법인세법에서 지출증명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지출품의를 완료한 사실이 있고

2015.12.18.～2016.5.24. 기간 중 □□팀은 관련 증빙이 없거나 품의 문서번호가 잘못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사업비를 출금하고, 2013.1월～2016.9월 기간 중 ◁◁◁◁팀 및 ▷▷▷▷▷팀은 골프 등 외부행사 경비 품의서 작성시 거래처 정보, 사용일자, 사용목적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채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지원 및 거래처 선물, 대외 접대 목적 등으로 △△△△CC로부터 김치 및 더치커피, ㈜◇◇◇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하였으나 지급처 및 배송정보 등이 불투명하여 사용 목적에 따른 사후 점검이 어려우므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경비 처리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집행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예산 관리 및 통제 강화 필요

○ 2013년～2016년 연간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대표이사 결재를 받지 않았고,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 등을 보관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으며,

각 부서에서 예산 수시배정 신청시 위임전결규정과 달리 임원 결재를 받지 않고 수시배정을 신청하거나, 예산 초과에 따른 예산 수시배정 신청 및 사전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 집행품의를 완료하는 등 예산통제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을 회사 내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법인카드 관리 강화 필요

○ 2013.1월~2016.9월 기간 중 회사 경비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필요한 자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 신분이 아닌 위임직 지점장 및 영업매니저 등*에게 법인카드를 영업목적 및 지점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고(총 24,056백만원),

* 위임직 지점장은「보험업법」제2조 제9항에 따른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회사는 지점장에게 지점 관리 및 설계사의 위촉·교육 등을 위임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임직원, 위임직 지점장 등이 퇴직한 이후 법인카드를 즉시 반납하지 않아 퇴직 이후에도 해당 법인카드로 4,742건(337백만원)이 승인·결제*된 사실이 있으며

* 직원이 퇴사하여 임원 또는 위임직 지점장 등으로 신분이 전환되거나, 신규 지점장이 부임하면서 신규카드 교체가 지연되어 퇴사한 지점장 카드를 지속 사용하는 경우 등

○ 2015.1월~2016.9월 기간 중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간 카드를 임의로 대여하여 골프장 등에서 28건(총 29백만원)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법한 사용자에 한하여 법인카드를 발급·사용토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자 퇴직시에는 즉시 회수하고,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골프관련 예산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013.1월～2016.10월 기간 중 영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CC의 골프이용권(단일이용권 및 복합이용권) 총 1,334매(1,855백만원)를 구입하면서

2014.5월～2016.10월 기간 중 구매한 골프복합이용권(1매당 170만원, 총 934매)의 경우 동 이용권에 포함된 구성내역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조건이 있는데도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골프복합이용권을 구매하였고,

○ 2013.1월～2016.9월 기간 중 업무독려비(골프독려비 포함) 및 업무접대비(골프이용권 포함), 임원 접대비 등 영업지원 및 접대 목적 등으로 골프 관련 예산을 총 3,620백만원(3,321건) 집행하면서 평일 골프장 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제한이 없어 132백만원(155건)의 예산이 평일에 집행된 사실이 있으며

골프이용권 및 골프접대비(법인카드) 사용 시 임직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도 있으므로

골프이용권 등의 구매시 필요성 및 사용조건 등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평일 골프장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골프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골프 관련 예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계열사 내부거래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013.1월～2016.9월 기간중 ㈜□□□ 등 계열사를 통한 상품거래(골프이용권, 김치, 와인, 도서상품권, 사무용품 등) 및 용역거래(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용역, 콜센터 운영 용역, 부동산 관리 용역 등)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골프이용권, 김치, 와인 구매계약, 콜센터 운영 및 부동산관리 용역 계약 등의 경우 계열사와 경쟁입찰 없이 전건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고,

○ 도서상품권, 김치, 더치커피, 와인 등을 계열사 및 그룹복지몰을 통해 구매시에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5.6.30. 창립기념일, 명절, 기념일 등에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품을 계열사의 김치, 와인, 커피, 기타 물품(의류, 모자 등) 위주로 판매하는 그룹복지몰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토록 하여 임직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연말까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팀에서 각 임직원에게 배정된 포인트로 계열사 상품을 임의로 구매하여 배송

대주주 등 계열사와 거래시 수의계약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사업등록 등) 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하고, 계열사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2015년도 및 2016.9월 회계 감사보고서를 외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면서 계열사 내부거래금액 중 FY2015년 142백만원, FY2016년 932백만원 총 1,074백만원을 누락하여 부정확한 금액을 공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계열사 내부거래금액 공시를 할 때 거래금액 등의 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점검기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위임전결규정 운영 불합리

○ 2016.8.26. ㈜□□□와 2016년도 부동산위탁관리계약(총 계약액 19억 36백만원 중 사옥 시설관리비용 15억 87백만원)에 대한 사업품의는 대표이사 전결사항인데도 인사실장 전결로 처리하였고

2016.5월 이후 5차례의 조직변경이 있었는데도 조직변경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을 즉시 개정하지 않고 마지막 변경시점인 2016.11.1.(검사기간 중)에 이르러 일괄 개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임전결규정」 등 내규를 준수토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 변경 시 결재권이 즉시 반영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증명서 및 자산 관리 불합리

○ 법원 등에서 발급 받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교부하고 있어 잔여부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 금고 내에 ◀◀◀◀팀에 할당된 별도의 전용 금고가 없어, 타 부서(▶▶▶▶팀)가 관리하는 금고에 ◀◀◀◀팀의 수익증권통장과 수익권증서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자산인 골프회원권 등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부서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등 자산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가 취약하므로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유가증권 등 자산, 증명서, 금고 등의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부동산 위탁관리 계약 불합리

○ 2016.8.26. 계열사 ㈜□□□와 2016년도 부동산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업무량에 대한 직무분석이나 업무전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의 임대관리팀 직원(2명)의 연간 인건비 일체(143백만원, VAT포함)를 임차관리(LM) 수수료로 책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부동산 위탁관리 계약(용역계약 포함) 등 체결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